

가상통화(仮想通貨)에서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 일본 자금결제법 등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김대홍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I 법률안 제출 경위¹⁾

일본에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대책에 관한 국제적 요청과 일본 국내의 비트코인 거래소의 파탄에 따라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결제법²⁾ 등의 개정으로, 2017년 4월부터 가상통화와 법정통화 등을 교환하는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고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일정한 이용자 보호규정이 정비되었다. 또한 범죄수익이전방지법³⁾의 개정에서 계좌개설시 본인 확인의무의 도입 등의 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대책이 아울러 강구되었다.

그렇지만 2018년 1월에 가상통화교환업자⁴⁾의 가상통화 외부유출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금융청의 현장 검사 등으로 다수의 가상통화교환업자의 내부관리상태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욱이 가상통화가 가격급등에 따라 이미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금을 이용한 가상통화 거래나 가상통화에 의한 자금조달 등의 새로운 거래방식이 등장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가상통화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 3월에 '가상통화교환업 등에 관한 연구회(仮想通貨交換業等に関する研究会)'를 설치하고 관계자로부터 청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상통화교환업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검토가 진행 중인 동년 9월에도 가상통화의 외부유출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동 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2018년 12월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渡邊将史·笠井彰吾, "暗号資産(仮想通貨)をめぐる制度整備—資金決済法等改正案の概要及び主な論点—", 『立法と調査』(2019.5 No.412),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 2019, 27-8頁 참조.

2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平成21年法律第59号).

3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平成19年法律第22号).

4 개정 자금결제법의 시행일(2017.04.01.) 이전부터 가상통화교환업을 하고 있던 자는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동 기간의 경과 후에도 등록심사 중인 동안은 해당 교환업을 할 수 있었다.

일본 각의(閣議)에서는 연구회의 가상통화를 둘러싼 제도정비의 검토 및 금융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제도정비의 검토,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따른 기타 제도정비의 검토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따른 금융거래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情報通信技術の進展に伴う金融取引の多様化に対応するための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하 '자금결제법 등 개정 법률안')을 2019년 3월 15일에 결정해서 제198회 국회(정기회의)에 제출하였다.⁵⁾

II 가상통화교환업 등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⁶⁾

가상통화교환업 등에 관한 연구회는 2018년 3월에 설치된 이후 해외의 사업자를 포함한 관계자로부터의 청문을 실시하면서 11차례에 걸쳐 가상통화교환업 등을 둘러싼 제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대응의 검토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통화교환업자를 둘러싼 과제에 대한 대응, 가상통화의 불공정한 현물거래에 대한 대응, 가상통화의 수탁업무에 대한 대응, 가상통화의 파생거래에 대한 대응, ICO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회 보고서의 주요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상통화교환업자를 둘러싼 과제에 대한 대응

(1) 고객재산의 관리·보전 강화

- 1) 수탁 가상통화의 유출위험에 대한 대응
- 2) 가상통화교환업자의 도산위험에 대한 대응
 - 가. 수탁 가상통화의 보전
 - 나. 수탁 금전의 보전

(2) 가상통화교환업자의 적정한 업무수행의 확보

- 1) 거래가격의 투명성 확보, 이익상충의 방지
- 2) 과잉광고·권유에 대한 대응
- 3) 자율규제규칙과의 연계

(3) 문제가 있는 가상통화의 취급

2. 가상통화의 불공정한 현물거래에 대한 대응

(1) 가상통화의 불공정한 현물거래 현황 및 규제 도입의 필요성

5 閣法第49号.

6 해당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www.fsa.go.jp/news/30/singi/20181221-1.pdf>.

(2) 가상통화의 불공정한 현물거래 관련 규제의 내용

3. 가상통화의 수탁업무에 대한 대응

(1) 가상통화의 수탁업무 현황 및 규제 도입의 필요성

(2) 가상통화의 수탁업무 관련 규제의 내용

4. 가상통화의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대응

(1) 가상통화의 파생상품 거래 현황 및 규제 도입의 필요성

(2) 가상통화의 파생상품 거래 관련 규제의 내용

가. 파생상품 거래임을 고려한 대응

나. 가상통화의 특성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대응

(3) 가상통화의 신용거래에 대한 대응

5. ICO(Initial Coin Offering)의 대응

(1) ICO의 현황 및 대응 방향

가. ICO에 의한 자금조달 현황

나. ICO와 관련한 규제 현황

다. ICO에 대한 대응의 방향성

(2) ICO와 관련한 규제 내용

가. 투자에 관한 금융규제를 요하는 ICO 관련 규제 내용

(a) 정보제공(공개)의 구조

(b) 제3자에 의한 사업·채무상황의 심사 구조

(c)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

(d) 토큰의 유통범위에 차이를 두는 구조

나. 결제에 관한 금융규제를 요하는 ICO 관련 규제 내용

6. 규제의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의 방식

7.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용어 변경

가상통화교환업 등에 관한 연구회의 보고서는 가상통화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생겨난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제도적인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회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관계자에 있어 동 보고서에 나타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실현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기를 기대하며, 가상통화에 관한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이 명확해지는 가운데 왜곡되지 않은 형태로 혁신의 가능성이 추구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제도적인 대응의 검토에 있어서는 장래의 환경변화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도모해 나가는 관점이 중요하지만, 연일 급속한 변화를 이루는 분야에 있어서는 향후의 환경변화를 앞질러서 모든 사태에 대응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는 어려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계속하여 거래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함과 동시에 혁신을 고려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확보해 나가는 관점으로부터 리스크의 고저 등에 따라 규제의 유연한 구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III 자금결제법 등 개정 법률안 의안정보

1. 의안심의정보⁷⁾

건 명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따른 금융거래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情報通信技術の進展に伴う金融取引の多様化に対応するための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종 별	법률안 (내각제출)		
제출회차	198회	제출번호	49
제출일	2019년 3월 15일		
중의원으로부터 수령/제출일	2019년 5월 21일		
중의원에 송부/제출일			
선의(先議) 구분	중의원		
계속 구분			
참의원 위원회 등 경과			
본 회부일	2019년 5월 22일		
회부 위원회 등	재정금융위원회		

7 해당 의안심의정보는 일본 참의원 웹사이트 참조 :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198/meisai/m198080198049.htm>.

의결일	2019년 5월 30일
의결-계속 결과	가결

참의원 본회의 경과

의결일	2019년 5월 31일
의결	가결
표결 형태	다수 (투표총수 222 / 찬성표 206 / 반대표 16)
표결 방법	전자투표

중의원 위원회 등 경과

본 회부일	2019년 5월 14일
회부 위원회 등	재무금융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7일
의결-계속 결과	가결

중의원 본회의 경과

의결일	2019년 5월 21일
의결	가결
표결형태	다수
표결방법	기립

기타

공포 연월일	2019년 6월 7일
법률번호	28

2. 의안요지⁸⁾

(재정금융위원회)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따른 금융거래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각법 제49호) (중의원 송부) 요지

본 법률안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따른 금융거래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금융기능에 대한 신뢰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암호자산교환업자에 관한 규제의 정비, 암호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제의 정비, 고객에 대한 정보를 그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등을 금융기관의 업무에 추가,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 청산에 관한 규정의 정비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 (1) '가상통화'의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암호자산의 정의에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전자기록 이전권리'를 제외하는 것과 함께 암호자산교환업의 정의에 암호자산의 교환 등에 관하여 암호자산의 관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추가한다.
- (2)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이용자의 금전을 신탁하고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원칙 이용자의 보호에 우려가 적은 방법으로 분별 관리하는 동시에 그 이외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이용자의 암호자산과 동종동량의 암호자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보유 후 이용자의 보호에 우려가 적은 방법으로 분별 관리해야 한다.

2.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 개정

- (1) 금융상품의 정의에 암호자산을 추가하고 암호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의 대상으로 한다.
- (2) 수익분배를 받을 권리 등 중 전자기록 이전권리를 제1항 유가증권으로 기업내용 등의 공개제도의 대상으로 하고, 전자기록 이전권리의 매매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1종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한 규제의 대상으로 한다.

3. 은행법 등의 일부 개정

은행 등의 부수업무에 고객에 관한 정보를 그 동의를 얻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그 외 보유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본업의 고도화 또는 이용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추가한다.

4. 시행 기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IV 자금결제법 등 개정 법률안 요약⁹⁾

1.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제1조 관련)

(1) 암호자산교환업에 관한 제도정비

- 1) '가상통화'의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암호자산의 정의에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전자기록 이전권리'를 제외하고, 암호자산교환업의 정의에 암호자산의 교환 등에 관계되지 않는

8 해당 의안요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198/pdf/580198490.pdf>.

9 해당 요약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 <https://www.fsa.go.jp/common/diet/198/02/youkou.pdf>.

암호자산의 관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추가한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2) 암호자산교환업의 등록거부사유에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으로서 당해 협회의 규칙에 준하는 내용의 사내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것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3조의5 관련)

- 3) 암호자산교환업자는 그 취급 암호자산의 명칭 또는 업무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3조의6 관련)

- 4) 암호자산교환업자가 광고 및 권유에 즈음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 암호자산교환업의 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3조의9의 2, 제63조의9의 3 관련)

- 5)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이용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고 암호자산의 교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3조의10 관련)

- 6)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이용자의 금전을 신탁하고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원칙 이용자의 보호에 우려가 적은 방법으로 분별 관리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이용자의 암호자산과 동종동량의 암호자산(이행보증 암호자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보유 후 이용자 보호에 우려가 적은 방법으로 분별 관리해야 한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3조의11, 제63조의11의 2 관련)

- 7) 암호자산교환업자에 암호자산의 관리를 행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암호자산교환업자가 관리하는 이용자의 암호자산 및 이행보증 암호자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게 한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3조의19의 2, 제63조의19의 3 관련)

(2) 기타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 개정 (제2조 관련)

(1) 암호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 및 금융거래에 관한 규제 정비

- 1) 금융상품의 정의에 암호자산을 추가하고 암호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의 대상으로 한다.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24항 관련)

- 2)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이 행하는 암호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 관련 업무에 대해 설명의무 등의 규정

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금융상품거래법 제43조의6 관련)

- 3) 수익분배를 받을 권리 등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 기타의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는 것에 한한다)에 표시되는 것(전자기록 이전권리)을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 기업내용 등의 공개제도의 대상으로 하고, 전자기록 이전권리의 매매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1종금융상품거래업에 관한 규제의 대상으로 한다.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3항·제8항, 제3조, 제28조 관련)

- 4) 수익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출자한 암호자산 등을 금전으로 간주하고,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의2 관련)

- 5) 암호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 및 금융거래를 업으로 행하는 경우의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업무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금융상품거래법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31조 관련)

(2) 암호자산을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의 정비

암호자산의 거래 및 암호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 등에 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

(금융상품거래법 제185조의22 내지 제185조의24 관련)

(3) 고객정보를 그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금융상품거래업자의 부수업무에 고객정보를 그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그 외 보유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본업의 고도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금융상품거래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관련)

(4) 전자적 기록에 관한 범칙조사절차 등의 정비

일정한 전자적 기록에 대한 압류 및 기타 전자적 기록에 관한 증거수집절차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금융상품거래법 제210조 내지 제226조 관련)

(5) 기타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제3조 관련)

(1) 금융상품의 판매의 정의에 암호자산을 취득시키는 행위를 추가한다.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2)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신용금고법, 장기신용은행법, 노동금고법, 은행법, 보험업법 및 농림중앙금고법의 일부 개정 (제4조 내지 제12조 관련)

(1) 고객정보를 그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은행, 보험회사 등의 부수업무에 고객정보를 그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그 외 보유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본업의 고도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은행법 제10조, 보험업법 제98조 등 관련)

(2) 보험회사의 보험업 관련 IT 기업 등의 자회사화에 관한 규정의 정비

보험회사는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기술 기타 기술을 활용한 보험업의 고도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이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의결권에 대해서 기존 의결권수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업법 제106조 관련)

5. 금융기관 등이 실시하는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제13조 관련)

장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특정금융거래를 행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특정금융거래에 따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또는 양도한 때에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자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당해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액수를 일괄청산 후 채권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금융기관 등이 실시하는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6. 기타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관련)

(2) 경과조치 등

- ① 필요한 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

개정 법률	개정 요강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자금결제법)	암호자산 (가상통화)	암호자산으로 용어 변경 및 정의 수정
금융상품거래법 등		암호자산교환업 규제
		금융상품거래업 규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판매법)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상품거래법	전자기록 이전권리	리테일 판매시의 불법행위책임
은행법, 금융상품거래법, 보험업법 등	금융기관에 의한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업	
보험업법	보험회사에 의한 InsurTech 기업 등의 자회사화	
금융기관 등이 행하는 특정금융거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일괄청산법)	회생절차 개시시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 등에 관한 담보권의 취급	
금융상품거래법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등 직원의 범칙조사에 있어 데이터의 압류 등	

V 자금결제법 등 개정 법률안 주요 논점¹¹⁾

1. 법령상 용어의 변경

2017년 4월부터 가상통화교환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할 때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의 용어가 사용된 이유로는 금융활동작업부회(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¹²⁾와 외국의 법령 등에서 사용하던 ‘virtual currency’의 번역으로 일본 국내에서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10 谷澤進, 芝草浩, 山本俊之, “2019年資金決済法等改正案の概要: 暗号資産・電子記録移転権利、金融機関による情報・データの利活用、一括清算法改正等”, 『金融ニューズレター』(2019年4月号), 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2019, 1頁 참조.

11 渡邊将史, 笠井彰吾, “暗号資産(仮想通貨)をめぐる制度整備—資金決済法等改正案の概要及び主な論点—”, 『立法と調査』(2019.5 No.412),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 2019, 33-40頁 참조.

12 1989년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통해 설립된 정부간 모임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책과 협력의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 예를 들어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정상선언 등에서 'crypto-assets'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개정 이전의 자금결제법에서는 법정통화와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환업자에 대해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가상통화'의 용어는 오해를 낳기 쉽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 등에 비추어 개정 법률안에서는 법령상 '가상통화'의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암호자산 유출 리스크에의 대응

일본에서 암호자산의 외부유출사건의 주된 발생요인은 핫 월릿¹³⁾에 대한 부정 액세스로 알려져 있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수탁 암호자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콜드 월릿 등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핫 월릿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 암호자산을 콜드 월릿 등으로 자체 보유하는 것을 교환업자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써 교환업자로부터 암호자산이 유출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해당 암호자산의 신속한 반환 등의 대응이 기대된다. 외부유출사건 발생시 이용자 보호는 물론이지만, 사건 자체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 금융청에는 수탁 암호자산의 관리와 같은 교환업자의 업무체제에 대한 적절한 검사 감독이 요구된다.

3. 문제가 있는 암호자산의 취급

모든 거래에 대해 어드레스를 추적할 수 있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교환업자가 실시하는 본인확인 등에 의해 어드레스와 소유자가 연관되어 있으면 거래한 인물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반면 익명성이 높은 암호자산이나 보안에 취약한 암호자산 등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대책이나 암호자산 유출 리스크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암호자산도 존재하고 있다.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日本仮想通貨交換業協会)¹⁴⁾의 자율규제규칙에서는 익명성이 높은 암호자산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 외에 암호자산의 특성에 따라 취급의 적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암호자산을 체크하는 방법으로는 신고제보다 어려운 등록제의 도입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운 암호자산을 이용한 기술혁신과 보유 암호자산이 분열¹⁵⁾된 경우의 취급 관련성 등의 관점에서 등록제의 도입에는 일정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환업자가 암호자산의 취급 판단에 고민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판단이 어려운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등의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암호자산의 문제에 관한 기준 등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등 금융청 및 협회로부터의 교환업자나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암호자산 이용자의 저변을 넓히기

13 암호자산의 이전에 필요한 정보(비밀 키)를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핫 월릿(hot wallet)이라고 하고,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되지 않은 상태(오프라인)에서 관리하는 구조를 콜드 월릿(cold wallet)이라고 한다.

14 일반사단법인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JVCEA)는 2018년 10월 24일 자금결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인전자금결제사업자협회로 금융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협회의 제1종회원은 19개사, 제2종회원은 8개사이다(2019년 4월 현재).

15 암호자산의 사양변경은 '포크(fork)'라 불리며, 기존의 사양과의 호환성이 없어지는 경우를 '하드 포크(hard fork)', 호환성이 있는 경우를 '소프트 포크(soft fork)'라고 한다. 하드 포크에서는 신규 각각의 사양에 의한 암호자산이 존속하고 분열하게 된다.

위해 이용자의 투자경험, 연간수입, 연령 등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암호자산에 차이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4. 광고·권유의 규제방식

개정 법률안에서는 교환업자 등에 의한 투기를 조장하는 광고·권유 등이 금지되게 된다. 협회의 자율규제규칙은 제3자에게 광고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의 제시와 암호자산의 성질 등에 관한 설명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암호자산교환업의 등록거부사유로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미가입한 법인으로서 당해 협회의 자율규제규칙에 준하는 사내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것 등이 추가되었다.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해서도 허위광고금지 등 교환업자와 유사한 규제가 이미 부과되어 있고 자율규제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사내규칙에 의한 제3자를 통한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다. 광고 규제의 검토에 있어서는 암호자산 관련 거래의 동향뿐만 아니라, 그 외 서비스 전체의 광고기법 동향에 입각하여 개정 법률안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규제방식을 적절히 정할 필요가 있다.

5. 암호자산 관련 거래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

암호자산 관련 거래에서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의 불공정거래가 문제시되어 왔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현행법상의 유가증권거래 등에 준하는 형태로 금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해서는 법령상 금지해야 할 행위를 명확히 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도 법령상의 규정은 없다. 그 이유로는 ① 많은 암호자산에서 발행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국에 소재하는 등 특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②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데 필수적인 고객의 거래판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 미공개 중요사실을 미리 특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자율규제규칙에서는 교환업자는 사내규칙에 따라 교환업자가 업무상 알 수 있는 범위의 정보에 비추어 내부자로 판단되는 자의 암호자산 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암호자산의 거래는 주식이나 외환시장에 비해 시장참가자가 적고 암호자산의 가격변동이 커지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환업자가 새로운 암호자산의 취급을 개시하는 이른바 '상장'의 정보나 암호자산의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정보에 의해 암호자산의 부정한 거래나 가격의 급등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융청이나 협회는 공정한 거래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개정 법률안과 자율규제규칙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암호자산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을 강구하도록 요구된다.

참고문헌

仮想通貨交換業等に関する研究会, “仮想通貨交換業等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2018.

参議院 財政金融委員会, “情報通信技術の進展に伴う金融取引の多様化に対応するための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閣法第四九号）（衆議院送付）要旨”, 2019.

金融庁, “情報通信技術の進展に伴う金融取引の多様化に対応するための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要綱”, 2019.

渡邊将史・笠井彰吾, “暗号資産（仮想通貨）をめぐる制度整備 — 資金決済法等改正案の概要及び主な論点 —”, 『立法と調査』(2019.5 No.412),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 2019.

谷澤進・芝章浩・山本俊之, “2019年資金決済法等改正案の概要：暗号資産・電子記録移転権利、金融機関による情報・データの利活用、一括清算法改正等”, 『金融ニューズレター』(2019年4月号), 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2019.

일본 参議院 웹사이트 : <https://www.sangiin.go.jp/>

일본 金融庁 웹사이트 : <https://www.fsa.go.jp/index.html>

일본 e-Govヘルプ 웹사이트 : <https://www.e-gov.go.jp/>